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301

발의연월일: 2021. 5. 21.

발 의 자 : 신동근・이상헌・윤영찬

양정숙 · 강준현 · 박상혁

윤관석 · 최혜영 · 이정문

강득구 • 박홍근 • 김두관

윤준병 · 정일영 · 이은주

맹성규・박성준・양이원영

유정주・김정호 의원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 서구의 한 야산에서 수십 마리의 개가 사육 과정에서 학대 당한 정황이 발견되는 등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동물 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할 행정청이 학대행위를 한 소유자로부터 그 피학대동물을 3일 동안 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아무런 제한 없이 피학대동물을 소유자에게 다시 반환해야하는 한계로 인해 사실상 동물학대 재발 방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조치 중인 피학대동 물에 대한 보호기간이 지난 후, 해당 동물을 반환받으려는 소유자는 학대행위의 재발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사육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고, 해당 소유자가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도와 시·군·구가 피학대동물 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구청장이 동물을 반환받은 소유자가 사육계획서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동물보호감시원에게 점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를 마련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재발을 예방하고 그 실효성 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20조제3호). 법률 제 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제19조제2항에"를 "제2항에 따른 사육계획서를 제출하고 제19조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조치 중인 제14조제1항 제3호의 동물을 반환받으려는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대행위의 재발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동물을 받환받은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사육계획서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제40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에게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제3호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육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4조제3호의 동물을 소유자로부터 격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동물의 반환 등) ① 시ㆍ	제18조(동물의 반환 등) ①
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제14조에 해당하는 동물	
을 그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	
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제3항에 따른 보호기	2
간이 지난 후, 보호조치 중인	
제14조제1항제3호의 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u>제19조제2항</u>	제2항에 따른
에 따라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사육계획서를 제출하고 제19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조제2항에
	_
<u><신 설></u>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구청장이 보호조치 중인 제14
	조제1항제3호의 동물을 반환받
	으려는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
	대행위의 재발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 관리하기 위화

① (생 략) <신 설>

제20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시· 제 도와 시·군·구가 동물의 소 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2. (생략)
- 3.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제19조제 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납부 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생략)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u>④ 시·도지사와 시장·군수·</u>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동물을 받환받은 소유자가 제2	
항에 따른 사육계획서를 이행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제40조제1	
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에게	
점검하게 할 수 있다.	
20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1. · 2. (현행과 같음)	
3	
아니하거나 제18조제2항에 따	
른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지 아	
<u>니한</u>	
4. (현행과 같음)	